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 ② 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 ②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 ①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②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성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③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 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⑦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교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 기관 정보의 안내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⑧ 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 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등급		1일 추가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 6시간미만	1등급	39,810	5,972
	2등급	36,850	5,528
	3등급	34,020	5,103
	4등급	32,470	4,871
	5등급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90,920	4,638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53,360	8,004
	2등급	49,420	7,413
	3등급	45,620	6,843
	4등급	44,070	6,611
	5등급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2,500	6,375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66,360	9,954
	2등급	61,480	9,222
	3등급	56,760	8,514
	4등급	55,210	8,282
	5등급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1등급	73,110	10,967
	2등급	67,720	10,158
	3등급	62,570	9,386
	4등급	61,000	9,150
	5등급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2시간이상~	1등급	78,400	11,760
	2등급	72,630	10,895
	3등급	67,100	10,065
	4등급	65,540	9,831
	5등급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2024.01.01 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복지용구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주·야간보호급여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
20%추가	2,483,88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	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가족요양 - 방문요양급여 제공받은 월은 20% 추가 산정안함

방문요양 급여비용¹ (방문당)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요양 급여비용2 (방문당)

시간	270분이상	300분이상	330분이상	360분이상	390분이상	420분이상	450분이상	480분이상
급여비용	66,770	83,400	90,890	99,280	108,150	115,020	121,090	133,540

가족요양60분(20일)				가족요양90분(31일)			방문목적			방문간호		
분류	20일	30일	31일	분류	차량(차량)	차량(가정)	차량미이용	시간	30분미만	30분이상	60분이상	
급여비용	482,400	975,300	1,007,810	급여비용	84,670	76,340	47,670	급여비용	40,760	51,110	61,490	
본부금(15%)	72,360	146,290	151,170	본부금(15%)	12,700	11,450	7,150	본부금(15%)	6,110	7,660	9,220	
본부금(9%)	6,510	13,160	13,600	본부금(9%)	7,620	6,870	4,290	본부금(9%)	540	680	820	
본부금(6%)	390	780	810	본부금(6%)	5,080	4,580	2,860	본부금(6%)	30	40	40	

방문요양 급여비용3 (방문당)

분류	등급	급여 비용	공휴일/유급		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50%+	30%+	월한도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남는비용	15%	9%	6%
1등급	120분이상	41,380	62,070	53,790	2,069,900	50	2,069,000	900	310,350	186,210	124,140
	150분이상	48,250	72,370	62,720	2,069,900	39	1,881,750	188,150	282,260	169,350	112,900
	180분이상	54,320	81,480	70,610	2,069,900	35	1,901,200	168,700	285,180	171,100	114,070
	210분이상	60,530	90,790	78,680	2,069,900	31	1,876,430	193,470	281,460	168,870	112,580
2등급	240분이상	66,770	100,150	86,800	2,069,900	31	2,069,870	30	310,480	186,280	124,190
	120분이상	41,380	62,070	53,790	1,869,600	41	1,696,580	173,020	254,480	152,690	101,790
	150분이상	48,250	72,370	62,720	1,869,600	35	1,688,750	180,850	253,310	151,980	101,320
	180분이상	54,320	81,480	70,610	1,869,600	31	1,683,920	185,680	252,580	151,550	101,030
	210분이상	60,530	90,790	78,680	1,869,600	30	1,815,900	53,700	272,380	163,430	108,950
3등급	240분이상	66,770	100,150	86,800	1,869,600	28	1,869,560	40	280,430	168,260	112,170
	120분이상	41,380	62,070	53,790	1,455,800	35	1,448,300	7,500	217,240	130,340	86,890
	150분이상	48,250	72,370	62,720	1,455,800	30	1,447,500	8,300	217,120	130,270	86,850
	180분이상	54,320	81,480	70,610	1,455,800	26	1,412,320	43,480	211,840	127,100	84,730
	210분이상	60,530	90,790	78,680	1,455,800	24	1,452,720	3,080	217,900	130,740	87,160
4등급	240분이상	66,770	100,150	86,800	1,455,800	21	1,402,170	53,630	210,320	126,190	84,130
	120분이상	41,380	62,070	53,790	1,341,800	32	1,324,160	17,640	198,620	119,170	79,440
	150분이상	48,250	72,370	62,720	1,341,800	27	1,302,750	39,050	195,410	117,240	78,160
	180분이상	54,320	81,480	70,610	1,341,800	24	1,303,680	38,120	195,550	117,330	78,220
	210분이상	60,530	90,790	78,680	1,341,800	22	1,331,660	10,140	199,740	119,840	79,890
5등급	240분이상	66,770	100,150	86,800	1,341,800	20	1,335,400	6,400	200,310	120,180	80,120
	90분이상	32,510	48,760	42,260	1,151,600	35	1,137,850	13,750	170,670	102,400	68,270
	120분이상	41,380	62,070	53,790	1,151,600	27	1,117,260	34,340	167,580	100,550	67,030
	150분이상	48,250	72,370	62,720	1,151,600	23	1,109,750	41,850	166,460	99,870	66,580
	180분이상	54,320	81,480	70,610	1,151,600	20	1,086,400	65,200	162,960	97,770	65,180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06시 :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
- 일요일 : 30% 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50% 가산